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신청기관	명칭(법인명)	법인등록번호
	주사무소 (소재지)	전화번호 (팩스번호)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.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.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)	

처리절차

